

변경비교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투자신탁(H) [주식]

□ 정정 사유 : ① 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-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

② 운용전문인력 변경

- 책임: 이태하, 부책임: 강우중 → 책임: 강우중, 부책임: 이태하

③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⑤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일부 회수 (50억원)

□ 효력 발생일 : 2021.1.8.

□ 정정 내용

| 항 목 | 정정 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표지 | | | |
| 투자위험등급 | 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| <u>3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 | <u>2등급(높은 위험)</u> |
| 요약정보 | | | |
| 투자위험등급 | 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| <u>3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 | <u>2등급(높은 위험)</u> |
| 투자비용 |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재 | - | <u>2020.12.29 기준</u> |
| | | - | <u>2020.10.30 기준</u> |
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|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<u>2020.12.29 기준</u> |
| 운용전문인력 | 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<u>책임운용역: 이태하</u> <u>부책임운용역: 강우중</u> <u>2020.8.31 기준</u> | <u>책임운용역: 강우중</u> <u>부책임운용역: 이태하</u> <u>2020.11.30 기준</u> |
|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| | | |
| 4.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라. 자산운용사 고유자산 | 고유재산 일부 회수 | 〈신설〉 | - 투자현황 <u>③2020년 12월 일부 투자금</u> |



| | | | |
|--|---|---|--|
| 투자 계획 | | - 투자금액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 장주 증권투자신탁 (H) [주식], 64억 | 액 회수 - 투자금액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투자신탁(H) [주식], 14억원 |
|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 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 | 운용전문인력 변경 | <신설> | 기준일: 2021.01.08 - 책임/부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(책임: 이태하, 부책임: 강우 종 → 책임: 강우종, 부책임: 이태하) |
| 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| 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책임운용역: 이태하 부책임운용역: 강우종 2020.8.31 기준 | 책임운용역: 강우종 부책임운용역: 이태하 2020.11.30 기준 |
| 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| 운용전문인력 변경 | 책임운용역: 이태하 (2018.10.11~현재) <신설> 부책임운용역: 강우종 (2019.10.30~현재) <신설> | 책임운용역: 이태하 (2018.10.11~2021.01.07) 책임운용역: 강우종 (2021.01.08~현재) 부책임운용역: 강우종 (2019.10.30~2021.01.07) 부책임운용역: 이태하 (2021.01.08~현재)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| 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 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 경 위험등급 변경 내역 | 투자위험등급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표준편차: 13.47% | 투자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 험) 표준편차: 17.70% |
| | | - | 2021.01.08: 3등급 → 2등 급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 률 변동성이 15%초과~25%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3등급 에서 2등급으로 변경 |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| <p>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 | <p>-</p> | <p><u>2020.12.29 기준</u></p> |
| 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 | 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 | <p>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 4,0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</p> | <p>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<u>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u> <u>내</u> <u>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 <u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</u></p> <p>공제제도 <u>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조</u></p> |

| | | | |
|--|--|--|--|
| | |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※ 지방소득세 별도 | |
|--|--|--|--|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재무정보 |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<u>2020.12.29 기준</u>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|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<u>2020.12.29 기준</u>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|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<u>2020.12.29 기준</u> |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<u>2020.8.31 기준</u> | <u>2020.11.30 기준</u>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|
| 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| 고유재산 일부 회수 | <신설> - 투자금액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(H) [주식], 64억</u> | - 투자현황 <u>③2020년 12월 일부 투자금액 회수</u> - 투자금액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(H) [주식], 14억원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|

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| 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 |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 |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 | 세액공제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 | 400만원 (700만원) | 600만원 (900만원) | 15% |
| 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 | | | 12% |
| 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 | 300만원 (700만원) | | |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

-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-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